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17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대책으로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자격 확대,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설치 등 상생법이 개정('13.8.6 공포, '14.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절차,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중 적합업종의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함

- 1)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위원들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3명)과 위촉직 위원(12명)으로 각각 구분하고, 사업조정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촉 위원을 회의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
- 3) 사업조정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촉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함(안 제21조제7항)

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한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경우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조정심의회와 같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의2)

다.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게 도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22조제1항),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 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 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
-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영 제23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마.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2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적합업종 사

업조정 신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사.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함(안 제27조제1항)

*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 영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영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

아. 그 밖의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자. 법 제34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별표 2)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368, Fax : 042-472-56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심의회의 위원”을 “조정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및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심의안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분야별 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심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⑤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등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7명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7항(종전 제4항) 중 “제2항3호”는 “제3항 각 호”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2조제1항 중 “조정심의회”를 “조정심의회(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에 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

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2조제6항에서”를 “법 제32조제8항에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 의결서
 4.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 ②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사업조정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업종의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 제5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권고·공표 및 철회”를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로, 제8호(종전 제7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3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으로 하고, 후단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호(종전 제8호)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9.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10.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8조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	5,000만원 이하

부 칙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p>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p>	<p>① ----- ----- ----- <u>15명</u> ----- ---</p> <p>② ----- ----- ----- <u>당연직 위원은</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신 설>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및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심의안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분야별 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심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등에 따라 위원

	<u>장이 지정한 7명</u>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⑥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 2. (생략)	⑦ 제3항 각 호의 ----- 연임할 수 있다.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제⑧항으로 한다.
<신설>	<p><u>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u>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p><u>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u></p> <p><u>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u></p> <p><u>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u></p> <p><u>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u></p> <p><u>⑤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u>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
<u>② ~ ⑥ (생략)</u> <u>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	<u>② ~ ⑥ (현행과 같음)</u> <u>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또는 조정심의회</u>

	<p><u>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u> <u>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u> <u>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되는 사항</u>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23조(사업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에 한한다)</u>
<u><신 설></u>	<p><u>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p>
② ~ ④ (생 략)	③ ~ ⑤항으로 한다
<u>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u> ----- -----.	<u>⑥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5항</u> 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환계되는 대기업 등은 제1항 각 호 및 <u>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u> <u>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 ---

<p>⑥ 법 제32조제6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p><신설></p>	<p>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제8조제3항에 ----- ----- ----- <p><u>제23조의2(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 등)</u>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의결서 4.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p>②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사업조정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p>
---	---

와 같다

<신 설>

제29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생략)
나. (생략)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1호	100만원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 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2호	500만원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3호	300만원
<신 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	5,000만원 이하